「자기주식취득」에 관한 부연 설명

1. 주주님들의 자기주식 취득 양도 신청가능 주식수 및 양도계약 성립 주식수

가. 양도신청가능 주식수 :

- 10,474주 이상 보유 주주의 경우 10,474주를 한도로 신청가능
- 10.474주 미만 보유 주주의 경우 본인 보유 주식총수를 한도로 신청가능

나. 양도계약 성립 주식수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림)로 정함(상법 제9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호)

다. 예시

아래 표와 같이, 30,000주를 보유한 A가 10,474주를, 100주를 보유한 B가 100주를 양도신청한 경우, 주주들이 양도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180,000주라고 가정할 경우, 당사와 A, B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주식수는 A는 609주, B는 5주임.

주주명	주식수			
	보유	양도신청	계약성립	비고
А	30,000주	10,474주	609주	609주(끝수는 버림)
				= 취득할 주식총수(10,474주)/양도신청주
				식총수(180,000주) × 신청주식수(10,474
				주)
В	100주	100주	5주	5주(끝수는 버림)
				= 취득할 주식총수(10,474주)/양도신청주
				식총수(180,000주) × 신청주식수(100주)
	•••	•••	•••	
		•••	•••	
합계		180,000주	•••	

2. 주주님들의 보유주식수 및 취득가액은 http://stefine.s-tank.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3.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자사주 매입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소액 주주님의 경우 처분차익에 대한 년간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양도자인 주주님들 본인께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셔서(주주님들의 인증서 필요) 신고납부를 하시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자사주 매입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 2024. 1. 1.부터 2024. 2. 28.까지)